#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5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조응천・박상혁・이상헌

박홍근 • 양향자 • 임종성

윤호중 • 한준호 • 오영환

서동용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공업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여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거래질

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근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 법률 제 호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신고(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 해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포상금) ① 등록관청은 다	제46조(포상금)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	
기관에 <u>신고</u> 또는 고발한 자에	<u>신</u> 고(제47조의2에 따른 부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에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u>&lt;신 설&gt;</u>	5.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
	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
	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